##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3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김용만·김용민·박상혁

강훈식 • 이수진 • 임미애

임오경 · 민병덕 · 이인영

조승래 • 민형배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현충일에 부산에 한 아파트에서 게첩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현장에서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욱일기 사용 등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친일반민족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2003년 여야합의로 통 과시킨 바 있고, 이 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하고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친일 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 2 신설).

법률 제 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5장에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금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18조의2(친일반민족행위 정당
	화 금지)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선동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u>한다.</u>